



---

# 2023년 인권경영 종합 보고서

---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 목 차

1. 인권경영 추진 개요 .....	3
2. 인권경영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보고 .....	4
3.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 .....	8
4. 구제절차 관련 보고 .....	13
5.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 .....	17
6. 인권경영 종합평가 .....	19

# 2023년 인권경영 종합보고

## I 인권경영 추진 개요

### 1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공기업)은 인권경영 보고서 공시
- 공사 스스로 인권경영을 점검할 기회를 갖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보 공개

### 2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8. 8.>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적용 <인권경영규정 2019. 10.>

### 3 인권경영 보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보고에 담아야 하는 사항<발췌>”

㉠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목록과 주요 내용</li> <li>▶ 인권경영 책임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li>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여부, 역할 및 구성 원칙</li> <li>▶ 국제인권기준 지지를 담은 인권정책선언 내용</li> <li>▶ 인권정책선언 제정 과정 및 확산 노력</li> </ul>
㉡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실시과정</li>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로서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li> <li>▶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및 대응 성과</li> </ul>
㉢ 구제절차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서술</li> <li>▶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li> <li>▶ 해당연도 구제절차 운영성과(접수건수 및 내역)</li> <li>▶ 사건의 처리 절차와 결과, 미해결 사건의 향후 대책</li> </ul>
㉣ 인권경영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인권경영 교육체계(규정, 전담부서, 담당자)</li> <li>▶ 인권경영 교육 주제 선정과정</li> <li>▶ 관리자 및 현원대비 교육 참여율 등 교육 운영성과</li> </ul>
㉤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칙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참여 등 종합적 평가를 도출한 과정</li> <li>▶ 인권경영 보고가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li> <li>▶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 소통 결과</li> </ul>

## II

# 인권경영체계 및 인권정책선언 보고

## 1 인권경영 체계 마련

단계별추진	내 용	기간
① 인권경영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li> <li>▶ 인권경영 정책선언 및 공표</li> </ul>	2018년 ~ 지속추진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영향평가 실시</li>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검토</li> <li>▶ 최고경영진 보고 및 대내외 공유</li> </ul>	2019년 ~ 지속추진
③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li> <li>▶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li> </ul>	
④ 구제절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절차 수립, 운영 및 전파</li> </ul>	

## 2 인권경영 관련 규정 목록 및 주요내용

규정 목록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권경영규정의 목적
	제2조(정의)	인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성별, 학력 등 비차별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 권리 보장
	제5조(직원인권 보호)	인격권, 휴식권 등 보호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금지
	제7조(산업안전보장)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 인권침해 유의
	제9조(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준수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유의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금지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2조(구제조치)	인권침해 대응, 구제조치 이행
	제13조(인권경영 현장)	인권경영현장 선포 및 실천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경영 실행전략 등 계획 수립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 운영
제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16조(인권교육)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제17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수행 기능
	제18조(구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제19조(소집 및 회의)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제20조(수당 등)	참석수당 등 지급
	제21조(의견청취)	회의안건 관련자 의견 청취
	제22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자 배제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지)	품위 손상 등 해촉 사항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신고 방법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침해행위 처리방법
	제29조(신고의 취하)	신고자의 신고 취하방법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인권침해행위 종결 사유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의 상담
	제33조(시정과 조치)	인권침해 사항 시정 및 조치

### 3 인권경영 조직 운영 체계

구분	대상	내용
인권경영 최고 책임자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총괄</li> <li>▶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li> </ul>
인권경영 위원회	내·외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li> <li>▶ 인권경영 운영 실태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li> </ul>
인권경영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및 인권경영체계 운영</li> <li>▶ 책임자/ 담당자 : 감사팀장 한석중, 인권경영 담당자 김지선</li> </ul>
인권지킴이	부서별 인권경영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li> <li>▶ 부서별 인권경영 업무 전담, 교육, 캠페인 등 활동 추진</li> </ul>

※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팀 → 청렴감사팀으로 명칭 변경

### 4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목적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설치

□ 위원회 역할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인권경영 관련 계획 · 정책 · 제도에 대한 자문, 인권침해행위 조사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사항 점검

□ 구성원칙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외부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각 본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위원으로 구성

□ 구성현황 : 총 7명(외부 4명, 내부 3명)

구분	성명	분야	비고
외부위원 (4명)	박○○	노사전문가	공개채용
	최○○	시민운동가	
	김○○	교수	
	김○○	교수	
내부위원 (3명)	이○○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도시개발(본부장)	
	이○○	시설운영(본부장)	

## 5 주요 개선사항

□ 인권경영 현장 개정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 및 공사 비전, 미션, 전략과제 반영

□ 인권경영규정 일부개정

- 내·외부 평가위원 확대(기존 5명 → 변경 7명)

□ 인권영향평가 시 주요사업 분야 확대

- 기존 2개사업(개발&주차) → 변경 3개사업(개발&주차&체육)

□ 인권경영 문화 확산

- 인권경영 실천 협의체 구축 및 합동 캠페인 실시
- 공정무역 업무협약 체결 및 티파티 행사, B-ESG 마켓 참여 등

□ 인권경영시스템 신규 인증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인증

□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 16단체 / 국제인권기준 준수, 전략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

□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평가 실시

- 인권존중 문화(인식, 이행) 20문항

□ 인권경영 강화에 따른 전담부서 변경

- (기존)경영지원부 → (변경)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 6 인권정책선언

### □ 인권경영현장 내 국제기준 지지 의지 표명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이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 □ 인권경영현장



#### Best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 현장>

우리는 「시민행복과 도시발전의 BEST 파트너」라는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이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관단 기준으로서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현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아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아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아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아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성을 보장한다.

아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나, 우리는 정부, 경기도, 부천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아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부천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에 앞장선다.

아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아나, 우리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실천, 사회적 가치 창출, 청렴문화, 투명경영 강화에 노력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01월 02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의 *원명희*

보다 나은 Best

### □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부천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 2023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대진한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과 형태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미 기업의 인권 책임은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산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국가기본계획에 정책목표로 반영되면서 공공기관 전략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미 확산된 ESG 경영 기반의 사회적 가치와 인권경영의 윤리적 책임을 통합하여, 고용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이에 사람중심, 희망 부흥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와 공공기관 노사는 「2019 일-노동 4.0 공동협약」을 계승하고, 지난 9월 12일의 ESG 경영 공동 실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2023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을 채택한다.

- 국제인권기준 준수 약속**  
일하는 모든 부천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등 기업과 인권 관련 모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선다.
- 공익 우선의 전략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는 위기관리 측면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적 위상을 차지한다. 임금체계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모두 부천시외 공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공익 우선의 전략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 이중구조 개선(1), 차별없는 일터 조성**  
노동인권 존중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시초는 일터에서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출발한다.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고충처리체도를 구축하고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차별 예방 및 차별 시정을 채택한다.



부천도시공사	사 장	원명희	<i>원명희</i>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만호	<i>박만호</i>
부천문화재단	직무대행	박경식	<i>박경식</i>
부천문화재단노동조합	위원장	김범진	<i>김범진</i>
부천산업진흥원	원 장	신동학	<i>신동학</i>
부천산업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영	<i>김미영</i>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태승진	<i>태승진</i>
부천아트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강우리아	<i>강우리아</i>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선희	<i>양선희</i>
부천여성청소년재단노동조합	비대위원장	임수지	<i>임수지</i>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원 장	신종철	<i>신종철</i>
한국문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태연	<i>이태연</i>

## □ 인권정책선언 제정과정 및 공개방식

- 인권경영헌장 제정 : 2018. 11.
- 인권경영헌장 개정
  - 2020. 12. : 공사 새로운 미션·비전 등 반영(주거환경 개선 역할 포함)
  - 2022. 12. : 인권위원회 보고 지침 반영(구제절차 포함)
  - 2023. 06. : 인권 이슈의 변화 대응 및 공사 비전, 미션, 전략과제 반영
- 제정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참조, 초안 작성  
→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자문 → 인권경영헌장 확정
- 공개방식

- 기관장 공동선언
- 홈페이지 게시 및 정보공개포털 등록
- 전국 지방 공사·공단 전파 공유



## Ⅲ

##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

### 1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이행
-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 평가주관 : 청렴감사팀, 각 지표별 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 1차 인권경영 지표담당자, 2차 인권경영위원회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업활동 전반사항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개발사업, 주차사업, 체육사업

○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구 분	담당부서(기구)	내 용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설계	청렴감사팀	▶ 평가방향, 절차 등 세부계획 마련 ▶ 평가계획, 평가지표 설계	11. 9.
평가지표 검토 및 확정	청렴감사팀 (검토: 인권경영위)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평가지표 적정성 검토 및 확정	11. 13.
평가지표 교육	감사팀 지표별 담당부서	▶ 지표별 담당자 확정 및 교육실시 ▶ 담당자 회의	12. 5.
자체평가 실시	소관부서 (총괄: 감사팀)	▶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검증(평가 총괄부서)	12. 5.~12. 11.
최종평가 및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 자체평가 신뢰성 검토 등 최종평가 ▶ 권고의견 제시 및 최종심의 의결	12. 19.
평가의견 수렴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수렴	12. 20.~12. 29.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청렴감사팀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타 기관 전파, 홈페이지 등 공개	'24. 1.

## 2 2022.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조치결과

□ 권고사항 5건 : 완료

구분	분야	개선과제	조치결과
기관 운영	5. 산업안전 보장	○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 후 작업장 현장점검 실시 및 의견수렴	▶ 조치완료
	8. 환경권 보장	○ 에너지절약 추진협의회 개최 및 교육 실시	▶ 협의회 개최(12월 완료)
주요 사업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편의 보장을 위한 안내판 확대 설치	▶ 거주자우선주차장 완료 ▶ 공영주차장: 2024년 완료
	3. 안전보장	○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 구매 실적 수치화 추진	▶ 조치완료 - 재정정보시스템 등록
	5. 근로자 인권보호	○ 부서내 자체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 인권매뉴얼 제작 배포

## 3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 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 설계
- 2019년 최초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사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2023년도 평가는 2022년도 설계 지표를 기반으로 추진

○ 기관운영 평가지표 : 【10개 분야】 - 【30개 항목】 - 【143개 지표】

No	분 야 (항목수-지표수)	No	분 야 (항목수-지표수)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30)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7)
②	고용상의 비차별 (4-16)	⑦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10)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14)	⑧	환경권 보장 (4-18)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2-12)	⑨	고객 인권보호 (2-8)
⑤	산업안전 보장 (4-18)	⑩	정보인권보호 (2-10)

○ 주요사업 평가지표 : 【개발사업분야】 - 【6개 항목】 - 【24개 지표】

No	평가항목 (지표수)	주요내용
①	개발계획수립 (3)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선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 공고
②	용지취득 및 보상 (6)	▶ 손실보상협의 수행 / 보상관련 의견수렴 / 정보제공 / 보상물건의 객관적 선정 및 공정한 보상금 지급
③	택지조성 (2)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 대체시설 마련
④	보건·안전 등 현장 근로여건 (5)	▶ 안전점검 관리체계 운영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임금체불 방지 노력
⑤	환경권 보장 (4)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실시 / 환경훼손 가능성 검토 / 부정적 환경요인 해소 노력 / 사업지구 내 문화적 가치 검토
⑥	권리구제 절차보장 (2)	▶ 보상 관련 구제절차 보장 / 현장노동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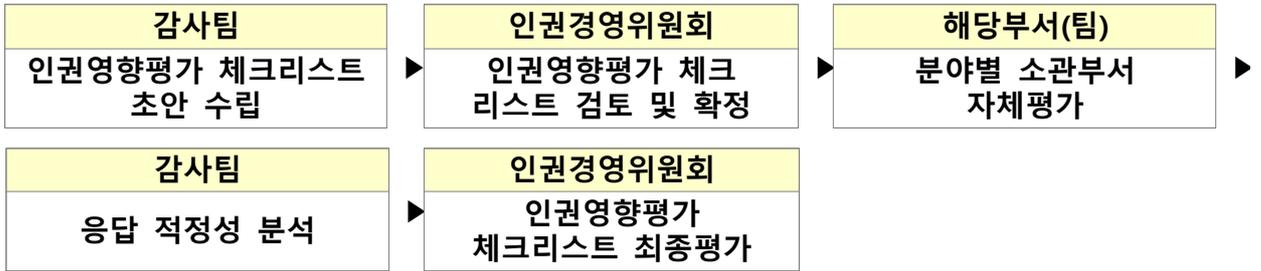
○ 주요사업 평가지표 : 【주차사업분야】 - 【5개 항목】 - 【22개 지표】

No	평가항목 (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운영 (5)	▶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공개 / 이용자 성희롱, 성폭력 방지 / 불편사항 접수절차 마련 및 조치결과 안내
②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3)	▶ 이동편의 마련 / 시설안내 / 제도운영
③	안전보장 (4)	▶ 시설물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환경기준 제품 구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수립
④	고객 인권보호 (5)	▶ 피해사실 안내 및 손실보상 / 정보수집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보안조치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근로자 인권보호 (5)	▶ 복리후생 노력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 노동자 평등 대우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

○ 주요사업 평가지표 : 【체육사업분야】 - 【4개 항목】 - 【17개 지표】

No	평가항목 (지표수)	주요내용
①	공정운영 (5)	▶ 선발절차와 방법 / 동등한 신청 기회 제공 / 성희롱·성폭력 방지 / 환불규정 / 불편사항 접수
②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5)	▶ 이동권, 이용권 보장 / 재해 예방 / 평등한 대우 / 치료 프로그램 운영 / 보상 및 구제절차
③	안전보장 (3)	▶ 정기적 교육 / 장애물 관리 / 안전장구와 시설 기능
④	지역주민 환경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4)	▶ 대기환경 미치는 요인 / 에너지 절약 / 개인정보 / 촬영 기구와 녹화물 관리

□ 자체 체크리스트 설계방법



□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2023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완료 : 2024. 1월 보고 완료
- 위원회별 평가분야 :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99.2점 ※ 전년대비 0.3점 상승

번호	분 야	항목	평가점수(점)		
			2023년	2022년	증감
평균		30개	99.2	98.9	↑0.3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100.0	100.0	-
2	고용상의 비차별	4	100.0	100.0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	100.0	100.0	-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2	100.0	100.0	-
5	산업안전 보장	4	100.0	90.6	↑9.4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100.0	100.0	-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94.4	100.0	↓5.6
8	환경권 보장	4	96.4	100.0	↓3.6
9	고객인권보호	2	100.0	100.0	-
10	정보인권보호	2	100.0	100.0	-

- 주요[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95.4점 ※ 전년대비 4.6점 하락

번호	분 야	항목	평가점수(점)		
			2023년	2022년	증감
평균		22개	95.4	100.0	↓4.6
1	개발계획 수립	3	83.3	100.0	↓16.7
2	용지취득 및 보상	6	100.0	100.0	-
3	택지조성	2	100.0	100.0	-
4	보건·안전 등 현장 근로여건	5	100.0	100.0	-
5	환경권 보장	4	100.0	100.0	-
6	권리구제 절차보상	2	75.0	100.0	↓25

- 주요[주차]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97.7점 ※ 전년대비 4.5점 상승

번호	분 야	항목	평가점수(점)		
			2023년	2022년	증감
평균		22개	97.7	93.2	↑4.5
1	공정운영	5	100.0	100.0	-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3	100.0	83.3	↑16.7
3	안전보장	4	100.0	87.5	↑12.5
4	고객 인권보호	5	100.0	100.0	-
5	근로자 인권보호	5	90.0	90.0	-

○ 주요[체육]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94.1점 ※ 2023년 최초 평가

번호	분 야	항목	평가점수(점)	비고
평균		17개	94.1	2023. 최초 평가
1	공정운영	5	100.0	
2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5	80.0	
3	안전보장	3	100.0	
4	지역주민 환경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4	100.0	

□ 외부위원 평가의견

평가분야	점수 (점)	평가의견
개발사업	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보호, 정보인권보호 측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음</li> <li>▶ 또한, 택지, 보건안전 등 현장 근로여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다만, 향후 추가적인 분야에 대한 평가도 고려 할 필요성 있음</li> </ul>
주차사업	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사업의 안전보장, 고객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보호 모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li> </ul>
체육사업	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사업분야의 인권영향평가는 총 4개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저시력자를 위한 안내물을 게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함</li> <li>▶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게시물은 이용자의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평가를 통해 발견된 수정 및 보완 사항들이 현장에서 즉시 반영될 수 있길 바램</li> </ul>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리스크 도출

No	해당지표	개선과제	이행기한
1	【기관운영평가 분야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협의 보상안내문에 이주자택지, 주택 등 이주자 및 생활대책 내용을 명시하는 계획 수립	'25. 상반기
2	【기관운영평가 분야8】 환경권 보장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위원회 개최 및 부서(팀)별 에너지절약 담당자 지정	완료 (23.12.26.)
3	【개발사업평가 항목1】 개발계획 수립	▶ 적절한 이주대책 수립	'25. 상반기
4	【개발사업평가 항목6】 권리구제 절차 보장	▶ 현장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불편사항 해소	완료
5	【주차사업평가 항목5】 근로자 인권보호	▶ 주차 현업직에 맞는 구제절차 계획 수립	'24. 상반기
6	【체육사업평가 항목5】 근로자 및 이용자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주의사항 고지 확대 운영</li> <li>▶ 저시력자 위한 안내물 게시</li> </ul>	'24. 상반기

## □ 주요 인권이슈 도출(중대성 평가)

- 주요 인권이슈 : 2건(환경권 보장, 권리구제 절차 보장)
  - (환경권보장)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 미흡
  - (권리구제 절차보장) 시공사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현장에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근무자 신고 시 노동자 불편
- 선정사유
  - 효율적 에너지 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선정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하여 우선해결하고자 함

## □ 주요 인권이슈 실행성과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위원회 개최 및 부서별 에너지절약 담당자 지정 실시
- 건설현장 건의함 설치 완료

## □ 이해관계자 요청사항 반영

- 주요사업 확대 평가 : 2개 사업 → 3개 사업으로 확대(체육사업 추가)
- 개발사업 평가 관련, 평가담당자 총원요청 사항 반영(1명 → 2명)

## IV

## 구제절차 관련 보고

### 1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운영근거 :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매뉴얼」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절차 방법 등 명시
    -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 규정

## □ 인권침해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구분	신고방법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신고 대상	▶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규정상 이해관계자
온라인	▶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이용 ( <a href="https://www.best.or.kr/fmcs/796">https://www.best.or.kr/fmcs/796</a> )
인권경영 담당부서 (청렴감사팀)	▶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제출 등) ▶ 전화, 대면상담 등 *인권상담원: 인권경영 담당자 및 청렴감사팀장

## □ 처리절차

구제절차	처리내용
<b>STEP1</b> 인권침해 여부 상담	▶ ○ 인권침해 여부 상담 ○ 인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b> 후 처리
<b>STEP2</b>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 <b>(온라인)</b> 공사 홈페이지 인권경영 카테고리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이용 ○ <b>(인권경영 담당부서)</b>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제출 등) - 인권침해 신고서(붙임1) 작성 후 신고 - 신고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대장(붙임2)에 기록
<b>STEP3</b> 인권침해행위 선별 및 처리	▶ ○ 공사의 현행 구제절차에 부합할 경우 <b>주관 부서에 이관하여</b> 처리 - 고충사항,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신고 등 ○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b>국가인권위원회 이관 또는 진정·민원절차 등 안내</b> ○ <b>조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b>
<b>STEP4</b> 인권침해 사건 조사	▶ ○ <b>위원회의 조사 개시</b>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b>STEP5</b> 인권경영위원회 결정	▶ ○ 침해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인에 결과 안내 ○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b>STEP6</b> 시정 및 조치	▶ ○ <b>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b> ○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b>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b> 등 조치

###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

- 인권침해 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범죄)에 해당될 경우 내부 절차와 별도로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

### ○ 접수 및 조사

- 구제대상인이 인권침해로 확인될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 심의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 결과 통보

## □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b>담당부서 주요기능</b> *기획감사실(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상담 및 조정</li> <li>▶ 인권침해 신고접수</li> <li>▶ 인권침해 조사 대상 선별</li> <li>▶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신고내용 보고</li> <li>▶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구제절차 논의</li> <li>▶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li> </ul>
<b>구제기구 주요기능</b>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접수사건 조사, 심의 및 의결</li> <li>▶ 인권침해 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요구</li> <li>▶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li> </ul>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외부 위원 (4명)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li> <li>▶ 前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 부위원장</li> </ul>	위원장 (노조추천)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부천시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li> <li>▶ 現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 부위원장</li> </ul>	시민활동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부교수)</li> <li>▶ 現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li> </ul>	교수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국립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부교수)</li> <li>▶ 現 한국소비문화학회 총무이사</li> </ul>	교수
내부 위원 (3명)	이○○	▶ 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당연직
	이○○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당연직
	이○○	▶ 부천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당연직

## □ 인권경영규정 개정 : 2023. 6. 21.

- 개정사유 : 내·외부 평가위원 확대로 책임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 개정내용 : 위원확대(개정 전 5명 → 개정 후 7명)

##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신규) : 2023. 12. 8.

- 취득사유 : 인권경영의 체계적 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인증
- 인증심사 : 1단계(성숙도 평가) → 2단계(인권경영시스템 적합도 평가)
- 인증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 □ 인권침해 구제업무 매뉴얼 개선 : 2024. 2. 20.

- 개정사유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활동 제도화
- 개정내용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매뉴얼 제작

### 3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홍보)

#### □ 공사 홈페이지 내 안내

- ▶ 공사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인권경영
- ▶ 연중 계속 게시
- ▶ (<https://www.best.or.kr/fmcs/796>)
- ▶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구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024. 2.



#### □ 부서별(팀) 인권지킴이 지정 및 활동

- 부서별 인권지킴이 지정 : 15명
- 활동내용 : 인권경영 교육, 전파, 캠페인 등 인권경영 관련 활동 실시

### 4 진정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 인권경영규정 내 신고인의 신분보장 명시

#####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 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사항

#### □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구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제작목적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경영활동 제도화
- 매뉴얼 내용
  - 구제 절차 : 구제 전담기구, 신고, 신고에 따른 구제 절차
  - 구제 매뉴얼 : 관리자 및 피해자 조치사항, 행위자 조치사항 및 사후 조치사항
- 제작 및 배포 : 2024. 2.

### 6 2023년 구제절차의 운영성과

#### □ 접수건수와 내역, 처리절차와 결과 : 해당없음

## 1 인권경영 규정 및 전담부서, 담당자

## □ 인권경영규정 내 인권교육 명시

## 제16조(인권교육)

-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인권경영 교육 전담부서 : 경영지원부

## □ 인권경영 담당자 :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김지선)

## 2 인권경영 교육 운영 성과

## □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추진 실적

## 추진결과

구분	인권교육	4대폭력 예방	갑질,괴롭힘 방지	인식개선	전문교육
내용	인권의식 확립	성희롱,성폭력 등	갑질예방	장애인 인식 등	전문상담 등
실적	261명	425명	415명	541명	8명

## ○ 장애인 근로자 인권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터 마련

- ▶ 교육 명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 ▶ 교육 일 : 2023. 5. 18.
- ▶ 이수인원 : 151명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참여율 100%)
-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강사 / 집체교육
- ▶ 교육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



## ○ 인권존중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방지 교육

- ▶ 교육 명 : 인권 존중과 괴롭힘 방지 교육
- ▶ 교육 일 : (1차)2023. 6. 12./ (2차)6. 23.
- ▶ 이수인원 : 415명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참여율 100%)
- ▶ 교육방법 : 인권분야 전문 교육강사 초청 / 집체교육
- ▶ 교육내용
  - (1차)관리자 : 인권문제 인식과 예방, 인권규범·규제 준수, 조직내 인권경영 구현 등
  - (2차)직원 :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인권실천을 위한 역량 강화, 직장내 괴롭힘(갑질) 예방 등



추진결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예방교육

- ▶ 교 육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 교육기간 : 2023. 1. 12.~12. 26.
- ▶ 이수인원 : 418명 (수료율 97%)
- ▶ 교육방법 : 집합교육(137명) / 원격교육(281명)
-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공정무역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활성화 교육

- ▶ 교육목적 : 인권존중 및 윤리적 소비문화 선도
- ▶ 교 육 일 : 2023. 9. 4.
- ▶ 이수인원 : 95명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참여율 100%)
- ▶ 교육방법 : 부천공정무역협의회 대표 초청 / 집체교육
- ▶ 교육내용 : 공정무역 인식개선 및 착한소비 등



○ 인권경영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 ▶ 교 육 명 :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 ▶ 교 육 일 : 2023. 12. 5.
- ▶ 이수인원 및 교육방법 : 10명 / 집합교육
- ▶ 교육내용
  - 인권영향평가 지표 설계방법, 주요사업 선정 사유 및 지표 적합성 검토
  - 지표별 인권영향평가 평가서 작성방법, 증빙자료 취합 및 제출방법 등



- ▶ 교 육 명 :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 《장애의 이해》
- ▶ 교 육 일 : 2023. 12. 7.
- ▶ 이수인원 : 15명 / 인권실천협의회 합동(3개 기관)
-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인권경영 프로그램 시청
- ▶ 교육내용 :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본 인권 침해적 사회상 이해, 인권가치 확산 등 인권감수 향상



□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인권 보호

<p>감정노동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일심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 2023. 3. 21.</li> <li>▶ 건강증진, 심리상담, 인적·물적 지원 협력</li> <li>▶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2명 / 건강증진 프로그램 68명(6회)</li> </ul> </li> <li>▶ 프로그램 만족도 : <b>매우 만족(91%)</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상잉볼 명상</p>
<p>고객접점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접점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 추진</li> <li>▶ 전문 교육기관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문화 향상 CS마인드 교육 : 2회(상,하반기)</li> <li>- 전화 모니터링 피드백 교육 : 1회(집중 코칭)</li> </ul> </li> <li>▶ 공공기관 서비스 트렌드 변화, 응대 전략, 긍정적 감정 형성 방법 등</li> </ul>	

### 1 인권경영 전체과정(성과) 종합적 평가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 보고 완료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수용,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
- 보고지침 반영 및 ESG경영 실천 기관으로 친환경 경영 실천을 포함하여 인권경영헌장 개정
-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인권지킴이 활동 등 인권경영을 중요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2023 부천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 인권경영의 체계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 2 미진한 점, 차년도로 넘겨진 인권이슈

#### □ 전년도 미진한 사항 개선

2022. 미진한 사항	2023년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실천협의체 활동 부진</li> <li>-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과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타 공사공단(시흥, 인천연수구) 체결한 업무협약 활동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협의 개최 : 2023.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인권경영 활동 토론</li> <li>- 합동캠페인 및 2024년 행사 관련 토론</li> </ul> </li> <li>▶ 합동 캠페인 실시 : 2023.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프로그램 시청 및 캠페인 실시</li> </ul> </li> </ul>

#### □ 보완, 개선 사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인권경영 실행 노력 강화

### 3 외부 이해관계자에 공개된 방법

□ 공사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게시판을 개설하여 정보 공개

구분	게시주소(URL)	공개 정보
인권경영현장	<a href="https://www.best.or.kr/fmcs/345">https://www.best.or.kr/fmcs/345</a>	인권경영현장 전문
인권경영규정	<a href="https://www.best.or.kr/fmcs/346">https://www.best.or.kr/fmcs/346</a>	공사 인권경영규정(개정사항 포함)
인권경영정보	<a href="https://www.best.or.kr/fmcs/347">https://www.best.or.kr/fmcs/347</a>	인권영향평가보고서, 인권존중 캠페인 추진결과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a href="https://www.best.or.kr/fmcs/796">https://www.best.or.kr/fmcs/796</a>	인권침해 유형, 신고처 등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등록

- 인권경영 성과 등을 사전정보로 등록, 정보공개포털에 표출 중(대국민 공개)

□ 공문발송을 통한 인권경영 실천 사항 전파

- 인권영향평가 종합 보고, 인권경영현장 개정사항 등 타 공사·공단 전파

### 4 제3차 검증여부, 검증기관과 결과

□ 인권경영 추진성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검증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성과 보고
  - 2023.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11.13.), 인권경영 추진실적 보고
  - 인권영향평가지표 적정성 검토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검증 및 심의(12.19.)
  - 검증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위원 교차 평가 실시

### 5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그 사유

□ 인권경영 보고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경우 없음

### 6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됨

- 종합평가결과: 가중치 5점 중 4.64점(평점 92.8점) / 1등급
- 종합의견
  - (잘된 점)인권경영 추진 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됨. 인권문화확산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협력기관과도 동반성장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함.

- (잘된 점)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하는 노력이 인정됨
- (미흡한 점)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내·외부 관련 위원의 확대 및 임명과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